

#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8. 12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기초교양교육원(950-5457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구성)	제3조(임기)	제4조(기능)
제5조(회의)	제6조(보고)	제7조(소위원회)	제8조(간사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따라 우리 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5.02.06)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2.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(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.)

③ 위원 중 최소한 1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3조(임기)**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·의결
2.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실시
3.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(대학 자율사항 : 교직 적성 인성검사 및 외국어 구사능력 포함 가능)
4. 교직소양과목 운영계획 수립 : 교재 또는 교수요목의 마련, 주관학과, 운영방법, 담당교수 확보 등
5. 현장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세부계획 수립,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및 이수방법 마련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보고)**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소위원회)** ①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 중에서 교학처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로 둔다.

#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